

# 전기공급약관(電氣供給約款)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about Point at Issue and Reform Measure of  
Stipulation for Electric Power Supply*



글 / 李 大 潤  
(Lee, Dae Yun)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주거문화진흥회장.

All nations are able to use electricity safely and usefully. And gas explosions and fire caused by the oil must be prevented. Therefore stipulation for electric power supply should be revised to be able to engineering full electrification in office building and mansions.

## 1. 전기사업의 현황과 실태

전기(電氣)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로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며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과학적으로 빛(光)이나 소리(音)나 화상(畫像)이나 열(熱)이나 힘(力) 등의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회사의 역사와 실태를 살펴보면, 최초의 전기회사는 1898년 1월 18일에 미국인 기술자가 설립한 한성전기회사이고 1920년에는 24개의 전기회사가 설립되었으며 1930년에는 50여개의 전기회사로 늘어났으나 합리적인 전원개발 및 송배전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1940년도에 4개의 전기회사로 합병되었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의 '해방'과 아울러 1948년 5월 14일에는 북한측의 일방적인 '송전중단'이 있었으며 또한, 1950년 6월 25일의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대부분의 전기공급설비가 파괴되었으나 1953년에 한미합동전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설비 등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1961년에는 당시의 조선전업, 경성전기 및 남선전기주식회사 등의 '전기3사'를 통합하여 국영 기업체인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발족하여 남한 전역에 대한 전기사업을 독점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기사업자는 독점기업에서 생기기 쉬운 서비스의 악화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불공평한 취급 등을 방지하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공정성 및 전기설비의 안전성 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적으로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경제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독과점을 금지하는 법을 이미 제정하였으나 전기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전국을 1개의 전기회사가 담당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기사업자의 사회적 의무의 기본원칙은 첫째로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고, 둘째로 전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급해야 하며, 셋째로 전기요금은 적정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의거 전기사업의 허가제, 전기공급약관의 인가제, 전압 및 주파수의 적정치 유지의무, 기술기준의 준수의무 및 전기사업에 대한 감사 등의 공공적 규제를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부득이한 독점사업에 대해 자유경쟁에서 자연히 얻을 수 있는 국민생활의 이익을 행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공공적 규제는 국가가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업자와의 사이에 서서 최종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을 보면 현저하게 부당한 내용이 많이 있으며 특히 아파트의 전기설비 및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부당한 사항이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전기사업자는 전기공급약관 제23조 및 제53조의 내용을 부당하게 작성하여 아파트(집합주택)의 전기공급방식을 공장 등에 시설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시설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거주자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모든 공공요금은 단일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만을 누진요금제로 만들어 모든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

으며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를 단일요금제로 시정해야 한다.

공정한 전기공급약관을 정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전기사업자가 작성한 공급약관에 대하여 전기사용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위원회는 심의와 조정을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급약관을 책임지고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전기사업법 제16조(공급약관)의 규정도 개정하여야 한다. 전기공급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게 된 목적은 모든 국민이 전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전화(全電化)집합주택 및 빌딩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요금 및 공급조건을 공정하게 시정하는 데에 있다.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開發을 통하여 國民 經濟의 發展에 努力하여야 한다(憲法127條).

## 2. 전기공급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전기공급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제2항은 아파트의 전기공급방식을 특수하게 적용하도록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필히 시정해야 한다.

종전의 전기공급규정 제23조제2항에서는 “1구내 또는 1건물이 2호이상의 공급단위로 분할될 경우에는 1구내 또는 1건물 전체의 계약최대전력을 기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급전압을 결정합니

다. 다만, 각 공급단위별로 소유권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공급단위별 계약최대전력을 기준하여 공급전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고 규정함에 따라, 아파트(집합주택)는 단위세대별로 소유권이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각 세대별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전기사업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아파트의 전기 공급방식을 공장과 같이 특수한 방식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공급규정의 내용을 부당하게 변질하여 전기사업자가 시설해야 할 변압기를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시설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다고 위협을 주는 행위는 전기사업법 제14조(공급의무)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현재 한전이 공급약관대로 고객과 공정한 협의는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아파트에 특수한 방식을 적용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모든 국민이 부당한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얹을하게 부담하고 있다. 집합주택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 및 배전설비 공사는 단독주택의 경우보다 적게 소요되므로 아파트의 전기공급방식과 그 공사를 단독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한전이 유리한데도 한전은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변압기를 시설하도록 요구하고 그 공사비와 관리비 등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아파트의 주거용변압기를 전력회사가 건물별 또는 계단별로 시설하고 있으며,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전화(全電化) 집합주택의 설계를 권장하고 있는데도, 한전만이 아파트에 특수한 방식을 강제로 적용토록 요구하는 행위는 독점기업의

횡포이므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

아파트는 단독주택을 한 건물에 수직으로 겹쳐 놓은 집합주택이므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참조) 집합주택의 전기공급방식을 다세대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압기설비를 한전이 직접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기공급약관 제23조2항의 단서에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수한 시설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당초의 규정대로 복원해야 한다.

## 2.2 전기공급약관 제53조(전기안전을위한고객의협력)

3항은 전기사업법 14조(공급의무), 67조(기술기준) 및 68조(전기설비의유지)와 산업표준화법 32조(규격준수)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필히 시정해야 한다.

전기사업법 14조(공급의무) 및 16조(공급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수요자에게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공공이익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한전은 자신이 작성한 ‘내선규정’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전기사용자에게 변압기를 강제로 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만일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겠다고 위협을 주고 있지만 이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전기사업법 67조(기술기준) 및 68조(전기설비의유지)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였고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

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전은 '기술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내선규정'에 의거 변압기설비를 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고 또한 전기설비의 위험성을 고의로 야기시키는 일이므로 한전은 전기사업법 및 기술기준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표준화법 제32조(규격준수)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의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 및 시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산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경우에 제28조(단체표준의제정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은 KS규격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한전은 '한전표준'을 임의로 만들어 'KS규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KS규격을 준수치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전 사장은 대한전기협회장을 겸직하면서 협회의 명의로 '내선규정'을 임의로 변질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선규정'은 당초에 일본전기협회의 '내선규정'을 원본대로 번역하여 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술기준'에 적합하였으나 한전은 자신의 부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 내용을 부당하게 변질시키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전기사업법과 산업표준화법 등을 준수치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21·22·23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국민은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설계도서의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지

적·물적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 4·10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는 저작물이고 그 저작권은 저작한때부터 자연히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한전은 전기수용신청절차를 이용하여 '설계도' 및 '시공도' 등을 미리 제출받아 기술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한 행정간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기공급약관 제53조 3항에서 "변압기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은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내선규정의 '수전설비표준결선도' 및 '옥내의사용전압과회로구성'에 적합하도록 미리 한전과 협의한 후 시설해야 합니다. 이때 수전용변압기, 수전용차단기, 수전용보호계전기, 수전용차단기의 전원축기기등은 정부공인기관의 합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를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는 그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해야 하며 KS규격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로 개정해야 한다.

### 2.3 전기공급약관 별표1(월간전기요금표)의 주택용 전기의 누진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시정하여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를 방지하며 모든 국민이 전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2001. 04. 08. 서울 미아동. 주상복합건물(2층)에서 가정용 LP가스가 폭발하여 건물이 붕괴되고 화재 및 인명사고(사상자 24명)가 발생하였으며, 2002. 01. 29. 군산시 개복동. 상가건물(2층)의 석유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가는 이의 대책으로써 심야전기와 상시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전전화(全電化) 주택 및 빌딩의 설계를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정용전

기의 누진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시정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일반 주택이나 빌딩에서 가스 또는 석유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전화 집합주택 및 빌딩의 설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30% 이상의 에너지절약효과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35조 및 12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전기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이므로 경제성이 높으나 가스 및 석유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으므로 국가는 전기의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국민이 전기는 비싸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제와 공급조건 등이 현저하게 부당하기 때문이다. 모든 공공요금은 단일요금제인데도, 가정용전기만을 누진요금제로 만들어 실제로 영업용전기보다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행위는 공공 이익에 크게 지장을 주는 잘못된 것이다. 한전이 가정용전기의 누진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일이며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이고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를 방지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현재 가정용전기요금이 7단계 누진제로 되어 있는 것을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가정용전기의 사용량에 대해 kWh당 60.00원을 적용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2.4 전기공급약관 별표1(월간전기요금표)에 의한 일반 용(업무용) 전기의 기본요금 및 사용량요금제가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

전기공급약관 제7조(단수처리)에 의하면, 계약 전력, 요금적용전력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산단위는 1KW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4에서 기본요금을 KW당 5,560원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용(업무용) 전기의 기본요금을 최저 4KW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매월 22,240원을 기본요금으로 계산하여 사용량에 관계 없이 매년 266,880원의 기본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전기사업자의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는 기본요금을 최저 0.5KW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종전에 최저 3KW부터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최저 4KW부터 강제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한 220볼트 승압정책 및 대용량기기 증대에 대한 부작용을 전기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당 행위이며 공공 이익에 지장을 주는 것이므로 업무용전기의 기본요금은 최저 1KW부터 적용하도록 시정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업무용(영업용) 전기의 사용량 요금을 단일요금제로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계절별 요금제로 복잡하게 변경하여 비싼 요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매년 여름철마다 전력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용량 냉방기를 과다하게 판매하기 때문인데도, 한전은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수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용량 에어컨의 판매를 부추기는 일을 하였다. 2000. 05. 19. 한전은 4대 일간지(동아, 조선, 중앙 및 한국일보)에 광고문을 게재하여 2~6KW의 대용량 에어컨을 구입하는

6,000명에게 42만원~118만원씩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국민의 전기요금(총35억원)을 낭비해 가며 여름철의 전력난을 증대시키는 행위가 되었다. 아파트 전기설비를 설계하는 자는 세대당 에어컨의 전기용량을 0.5~1KW로 설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판매업자는 2~6KW의 대용량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으며 한 전은 이를 알고도 오히려 이를 조장하여 전력난을 스스로 야기시키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도, 한전은 여름철 전력난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을 평상시 요금의 150%에 해당하는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사업자의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에는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심야 전기와 상시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전전화(全電化)빌딩의 설계를 권장해야 하며 일반용전기의 계절별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시정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일반 빌딩에도 가스 또는 석유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전화(全電化)빌딩의 설계를 권장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30% 이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은 전기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에너지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전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용전기의 기본요금에 대하여 최저 4KW부터 적용하는 것을 최저 1KW부터 적용하도록 시정하고 사용량에 대한 계절별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시정하여 모든 사용량에 대하여 kWh당 70,000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 2.5 전기공급약관 별표4(표준공사비단가표)에 의한 1.

기본공사비중 저압의 경우 최근에 과다하게 인상하였고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표준공사비를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

1983년도 당시의 전기공급규정 84조(일반공급설비의공사비부담), 85조(표준공사비와설계공사비의적용대상), 86조(특별공급설비의공사비부담), 87조(특별부담), 88조(공사비의분담), 89조(공사비의납부및정산), 90조(표준공사비등의조정)에 의하면, 전기사용자가 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배전선로의 공사비는 수용가와 한전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표준공사비 및 설계공사비중 타당한 공사비를 수용가가 선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현행 전기공급약관 83조(공사비부담의일반원칙), 84조(일반공급설비의고객부담공사비)내지 92조(공사비의납부시기및정산), 93조(표준공사비의산정) 등에 의하면, 공사발생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93조(표준공사비의산정)에 의거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고객으로 하여금 강제로 부담하게 하고 저압, 고압 또는 특별고압(22,900V)의 경우 기본공사비와 거리공사비를 모두 합한 표준공사비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경우(수용가가 자가용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탁공사시에는 표준공사비와 설계공사비중 타당한 공사비를 수용가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게하고 수용가가 인입선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준공도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압에 있어 1991년부터 가공의 경우는 용량 3kw 및 기본거리 200m 이하에 25,000원, 지중의 경우는 용량 3kw 및 기본거리 50m 이하에 100,000원으로 기본공사비를 적용토록 하였는

데도, 한전은 1993년 및 1994년도에 부당하게 몇 배를 인상하여 가공의 경우는 25,000원을 127,000원으로, 지중의 경우는 100,000원을 259,000원으로 기본공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였다. 그러므로 한전은 1991년의 금액에 대해 각각 150%를 적용하여 가공의 경우는 37,500원으로, 지중의 경우는 150,000원으로 기본공사비를 적정하게 시정해야 한다. 또한, 1991년도 당시에는 기본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1kw당 가공의 경우는 20,000원을, 지중의 경우는 40,000원을 각각 적용하였으나, 한전은 갑자기 몇 배를 인상하여 가공의 경우는 1kw당 20,000을 59,000원으로, 지중의 경우는 40,000원을 85,000원으로 각각 부당하게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전은 1991년의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150%를 적용하여 가공의 경우 1kw당 30,000원을, 지중의 경우는 60,000원을 용량공사비로 각각 적정하게 적용하도록 시정해야 한다.

#### 2.6 전기공급약관 별표4(표준공사비단가표)의 2.거리공사비중 저압의 경우는 최근에 과다하게 인상하였고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경우 위탁공사 및 표준공사비를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

종전에는 전기사용자가 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배전선로의 공사비는 수용가와 한전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고 표준공사비와 설계공사비중에 타당한 공사비를 수용가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재는 공사발생유무 및 공사비내역에 관계없이 전기공급약관 93조(표준공사비의 산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고객으로 하여금 모두 부담하게 하고 또한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22,900V)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본공사비와 거리공사비를 모두 합한 표준공사비를 고

객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한전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탁공사시 표준공사비와 실제공사비중에 타당한 공사비를 수용가가 선택하도록 하고 수용가가 인입선로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준공도서를 제출하도록 약관을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거리공사비는 저압신설에 있어 1991년부터 가공의 경우는 기본거리 200m 초과시 1m당 5,000원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지중의 경우는 기본거리 50m 초과시 1m당 25,000원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한전은 1993년 및 1994년에 각각 몇 배를 인상하여 가공의 경우 5,000원을 44,000원으로, 지중의 경우 25,000원을 58,000원으로 부당하게 인상하였다. 그러므로 한전은 1991년의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150%를 적용하여 가공의 경우는 7,500원, 지중의 경우는 37,500원을 거리공사비로 적용하도록 시정해야 한다.

또한, 1991년도 당시의 첨가공사비는 기본거리 200m를 초과하는 경우 첨가하는 선의 수에 관계없이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2,500원을 적정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에 한전은 몇 배를 인상하여 2,500원을 21,000원으로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1991년의 금액을 기준으로 150%를 적용하여 첨가거리 매 1m당 3,750원을 첨가공사비로 적용하도록 시정해야 한다.

모든 國民은 健康하고 鮮明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는 住宅開發政策 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鮮明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憲法35條).

(원고 접수일 2002. 3. 20)